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에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신청서에는 검증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자료

③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별표 2의 제2호나목2)의 “위팔장애”를 “상지장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 신청서

☐ 신규신청
☐ 연장신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업종형태	제조사 []	수입자[]	판매자[]
	실 무	성 명	전화번호	
	책 임 자	전자우편		
제조사	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필요 시 별지 사용)	검증 분야	제품명	
	용도	검증 신청제품 처리방법	반환[] 폐기[]
	기본 모델명	파생 모델명	
	검증 신청제품 제출	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	
	접근성 기능 설명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해당 제품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8.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할 것			
해당 제품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물	1. 검증 신청제품, 2. 제품설명서, 3. 사용자 취급설명서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증 수행 차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증서 발급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서	
등록번호	
제품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보유자(기업체)	
가. 성명(기업체명)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주소(소재지)	
유효기간	
기타	
위 제품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검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 품의 접근성 검증신청 등) ① 영 제 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u> <u>② 제1항에 따른 검증신청서에는 검증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u> <u>1. 제품설명서</u> <u>2. 사용자 취급설명서</u> <u>3.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자료</u> <u>③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증서 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u>
[별표 2] 1. (생 략) 2. 인력 관련 기준 가. (생 략) 나. 1) 및 2)에 따른 3명 이상의 사용 자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 야 한다. 1) (생 략) 2) 지체장애인(위팔장애) 또는 뇌 병변장애인 1명	[별표 2] 1. (현행과 같음) 2. 인력 관련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 -----. 1) (현행과 같음) 2) -----(<u>상지장애</u>)----- -----